

교양과목<해외어학연수> 학점인정제 규정

제 1 조(목적) 학생들의 국제이해와 외국어향상 욕구를 수용하고 수강학과목을 다양화하고자 한다.

제 2 조(적용대상) 2006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복학자, 재입학자, 유급자는 불인정한다.

제 3 조(성적처리) 교양 2학점(과목명 : 해외어학연수)으로 인정하며, 성적처리는 Pass로 한다.

제 4 조(운영방안) ①「해외어학연수」 과목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.

②「해외어학연수」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규정 “제6조(제출서류) ①~③”을 구비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각 학과는 신청자의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여, 학점 인정대상자를 매 학기말까지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인정기준) ①재학생이 방학 중에 실시한 해외어학연수만 인정되며, 실시된 당해학기의 성적에 반영한다.

②졸업 시 까지 1회에 한하여 2학점 인정한다.

③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 이수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한다.

④졸업학기 중의 해외어학연수는 인정받지 못한다.

1. 2년제 학과는 2학년 여름방학, 3년제 학과는 3학년 여름방학까지만 인정한다.

⑤「해외어학연수」 학점은 학칙 제24조 ③항의 “한 학기 24학점 이내 학점취득”이라는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.

제 6 조(제출서류)

①해당 외국어학연수기관이 발행한 어학연수프로그램 이수증명서 1부

②해외어학연수보고서(별첨서식 제1호) 1부.

③출입국 사실 증명원 1부 또는 출입국기간이 명시된 여권사본

④ 학점인정서(별첨서식 제2호) 1부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서식 제1호)

해외어학연수보고서

어학연수국가		연수 기간	. . . 부터 . . . 까지 (. . . 개월 . . . 일간)
어학연수기관			
어학연수내용 (개괄적으로 작성)			
연수소감 (구체적으로 작성)			
비 고			

년 월 일

학 과 :

학 번 :

성 명 :

인

한양여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확인자 :

학과장

인

